수원 영통 1블럭 임광그대家 입주자 모집공고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 안심하고 분양 받으셔도 됩니다.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수원시 건축과 – 38992호(2007. 12. 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10번지외 32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지상16~21층 10개동, 총 6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세대(국가유공자등, 3자녀특별공급 포함) 21세대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천원/VAT포함)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층별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1회 2008.05.09	2회 2008.09.09	3회 2009.01.09	4회 2009.06.09	5회 2009.10.09	6회 2010.02.09	잔금 (입주지정일) 30%
민영주택	21709-01	2007001275(01)	83.5526	59.9513	23.6013	83.5526	29.1783	112.7308	35.90	68	1층	289,700	28,970	28,970	28,970	28,970	28,970	28,970	28,970	86,910
											2층	307,000	30,700	30,700	30,700	30,700	30,700	30,700	30,700	92,100
											기준층	316,500	31,650	31,650	31,650	31,650	31,650	31,650	31,650	94,950
	21709-02	2007001275(02)	83.5154	59.9754	23.5400	83.5154	29.1900	112.7054	35.92	64	1층	297,200	29,720	29,720	29,720	29,720	29,720	29,720	29,720	89,160
											2층	306,700	30,670	30,670	30,670	30,670	30,670	30,670	30,670	92,010
											기준층	316,200	31,620	31,620	31,620	31,620	31,620	31,620	31,620	94,860
	21709-03	2007001275(03)	134.0754	101.7179	32.3575	134.0754	49.5061	183.5815	60.92	158	1층	564,000	56,400	56,400	56,400	56,400	56,400	56,400	56,400	169,200
											2층	582,000	58,200	58,200	58,200	58,200	58,200	58,200	58,200	174,600
											기준층	599,000	59,900	59,900	59,900	59,900	59,900	59,900	59,900	179,700
											최상층	647,900	64,790	64,790	64,790	64,790	64,790	64,790	64,790	194,370
	21709-04	2007001275(04)	133.6996	101.6675	32.0321	133.6996	49.4816	183.1812	60.89	83	1층	564,000	56,400	56,400	56,400	56,400	56,400	56,400	56,400	169,200
											2층	582,000	58,200	58,200	58,200	58,200	58,200	58,200	58,200	174,600
											기준층	598,500	59,850	59,850	59,850	59,850	59,850	59,850	59,850	179,550
											최상층	647,900	64,790	64,790	64,790	64,790	64,790	64,790	64,790	194,370
	21709-05	2007001275(05)	154.4648	124.8636	29.6012	154.4648	60.7712	215.2360	74.78	80	1층	678,600	67,860	67,860	67,860	67,860	67,860	67,860	67,860	203,580
											2층	700,200	70,020	70,020	70,020	70,020	70,020	70,020	70,020	210,060
											기준층	721,900	72,190	72,190	72,190	72,190	72,190	72,190	72,190	216,570
											최상층	772,400	77,240	77,240	77,240	77,240	77,240	77,240	77,240	231,720
	21709-06	2007001275(06)	179.6831	144.8077	34.8754	179.6831	70.4780	250.1611	86.73	79	1층	816,900	81,690	81,690	81,690	81,690	81,690	81,690	81,690	245,070
											2층	842,900	84,290	84,290	84,290	84,290	84,290	84,290	84,290	252,870
											기준층	869,000	86,900	86,900	86,900	86,900	86,900	86,900	86,900	260,700
											최상층	929,800	92,980	92,980	92,980	92,980	92,980	92,980	92,980	278,940
	21709-07	2007001275(07)	214.6384	173.9333	40.7051	214.6384	84.6535	299.2919	104.17	70	1층	957,700	95,770	95,770	95,770	95,770	95,770	95,770	95,770	287,310
											2층	983,500	98,350	98,350	98,350	98,350	98,350	98,350	98,350	295,050
											기준층	1,029,800	102,980	102,980	102,980	102,980	102,980	102,980	102,980	308,940
											최상층	1,074,200	107,420	107,420	107,420	107,420	107,420	107,420	107,420	322,26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당 개별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 ·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단한,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 • 잔금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 • 공급금액에는 별도계약품목이 포함되지 않는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전혀 없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층수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신청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총괄 공급금액을 산정하였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경기도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2003.6.7)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제한(계약체결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전매금지이 적용됨. • 경기도 수원시는 주택투기지역(2003.5.29)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등 주택담보대출제한이 적용됨. • 당 사업지는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으로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하며, 국가유공자 등에도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3%를 특별공급함. •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는 태장초등학교 통학구역이나 부득이한 경우 통학구역이 대산초등학교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선공급대상임.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정리 등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부득이한 사유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1순위 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2순위 이상을 소유하신청주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동일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 및 주택소유 사실 포함)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순위로 가능)되며, 상기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참조)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감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30~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

•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총점 84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
• 감점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감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 ※ 가점항목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후에 당첨자에 대해 청약 내용의 허위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사전에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당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1.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산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비고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등 • 호적등본 (만30세 이전에 결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향후 입주자 지정일 이전 입주 분양받을 수 없음.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가입자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		

2.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 도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재해주택을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는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지등부여함
3.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1)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 점기준 적용함 2)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4.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기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이상 소유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써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 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보유특례).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소형 · 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하신소형 · 저가주택을 보유하기 전의 무주택기간은 불포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5.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면적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입납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면적변경한 경우는 면적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확수에 관계없이 면적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면적변경한자 신청요건 – 직은 주택규모로 변경한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면적만 신청 가능 (단, 1년 미만이자는 변경전 면적 신청가능) – 청약자중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94.8.16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순위자로서 최초입주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자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순위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접수방법

• 특별공급(3자녀 이상):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공통 : 충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수원시 및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에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무작위 추첨제) 선택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자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단, 1순위자에 한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3순위 : 중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상기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접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인터넷 · 모바일 신청접수방법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분 – 3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	
	KB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 (WIP폰 기종만 가능)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KB모바일	▶ SKT : MBank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 신청 ▶ KTF, LGT : KB뱅킹 접속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 신청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영업점 창구 접수자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본 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 국민은행 비치) • 청약예금 · 청약부금 통장(제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제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주민등록 초 · 등본, 의료보험증 등) : 배우자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 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전용 85㎡이하	전용 85㎡초과	신청금납부방법 (영업점 창구 접수자에 한함)
청약신청금	100만원	200만원	가능한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가능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공고 익영업일(2008. 1. 7)이후 평일 09:30~16:30 (단, 토 · 일 · 공휴일은 환불하지 않음)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환불장소 :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 [단,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은행계좌로 이체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됨] • 환불시 구비사류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사항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사에 한함) • 제2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사류 이외에 제2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인감도장, 위임장 • 제2순위 당첨자의 청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국민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당주택의 특별공급당첨자는 타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제한됨
공 통	•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음. 1 ·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가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입주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 135㎡이하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주택건설지역 6개월이상 거주신청자가 수도권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고, 전용면적 135㎡초과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 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자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 참기회시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추첨에 참기하여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08. 1. 9(수) ~ 2008. 1. 11(금) (3일간, 9 : 30 ~ 16 : 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57–5, 557–6번지 – 문의전화 : 1600–0233
–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 판명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당사 견본주택에서 국민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